

모바일주소(WINC) 부가정보현행화 지침

제정 2004. 04. 20
 개정 2004. 08. 23
 개정 2005. 07. 08
 개정 2006. 11. 29

1. 개요

- o 모바일주소(WINC)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및 안정화를 위하여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증대를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부가정보(모바일브랜드 등)의 현행화를 말하며, 대상은
 - 타인의 상표·서비스표를 도용한 모바일브랜드(허위정보)
 - 비활성화 콘텐츠에 연결되는 모바일브랜드(비활성화정보)
 - 불건전(불법·청소년유해·불량) 콘텐츠에 연결되는 모바일브랜드(불건전정보) 등임
- o 관련근거
 - 등록관리규칙 제4조

④ 진흥원은 전항의 부가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거나,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 후 중단할 수 있다.

- o 시행일 : 2004년 4월 20일부터

※ 단, 허위 모바일브랜드에 대한 현행화 조치를 시행일 기준 우선 시행하고, 비활성화 모바일브랜드 및 불건전 모바일브랜드 현행화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토록 함

- o 현행화의 대상 부가정보

구분	대상 부가정보	주요내용
허 위 정 보	허위 모바일브랜드	타인의 상표·서비스표를 도용하여 등록한 모바일브랜드

구분	대상 부가정보	주요내용
비활성화 정 보	비활성화 모바일브랜드	1개월 이상 정상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콘텐츠에 연결되는 모바일브랜드
불건전 정 보	불법 모바일브랜드	사회질서 위반 콘텐츠에 해당하는 모바일브랜드
	유해 모바일브랜드	음란·폭력·청소년 유해 콘텐츠에 해당하는 모바일브랜드
	불량 모바일브랜드	비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불량 콘텐츠에 해당하는 모바일브랜드

※ 불건전 정보 심의를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협의 추진 예정

- o 단계별 추진방안

단계구분	정책 및 세부내용	비고
1단계	o 부가정보 등록자 자율 현행화 기간 - 현행화 대상 부가정보에 대한 등록자가 자율 변경 및 삭제 유도	~2004년 3월
2단계	o 부가정보 현행화 조치 추진 - 허위 모바일브랜드 현행화	2004년 4월~ (지속적)
	- 비활성화 모바일브랜드 현행화 - 불건전 모바일브랜드 현행화	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조치 예정

2. 부가정보 현행화 세부 시행 지침

- 허위 모바일브랜드 현행화 방안

- o 개 요

- 타인의 상표·서비스표를 도용하여 등록된 모바일브랜드 등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신고 및 근거자료를 접수받아 현행화(변경 또는 삭제) 조치함
- 조치대상 모바일브랜드는 별도 유보어로 관리하여 상표·서비스표 등록증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등록 가능토록 함

○ 처리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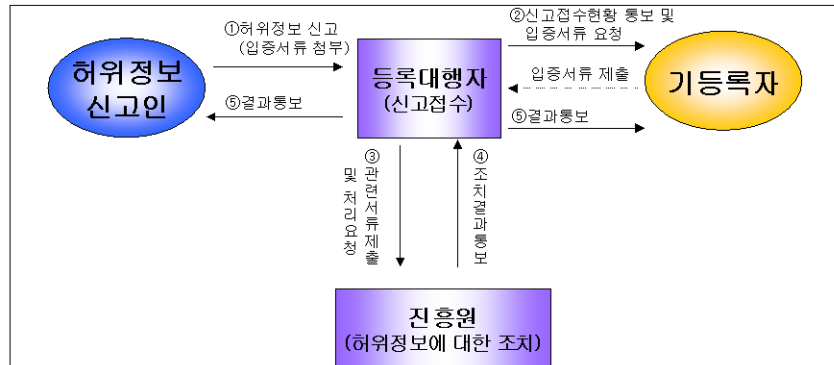
- 기 등록된 모바일주소(WINC) 부가정보(모바일브랜드 등)가 허위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(허위정보신고인)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등록대행자를 통해 허위정보 신고

※ 신고인의 허위정보 입증 사항

- 이의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부가정보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함
- 등록인이 해당 부가정보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
- 등록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부가정보를 등록 및 사용중인 경우

- 진흥원은 허위정보임이 입증된 부가정보를 삭제 조치하고, 해당 정보는 일정기간(삭제이후 1개월간)동안 등록을 유보(유보어로 별도 관리)
- 유보기간 이후 유보어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·서비스표 등록중에 의해서만 신청 가능하며, 신청하고자 하는 정보는 등록중의 정보와 반드시 일치해야만 함

○ 처리절차도



※ 허위정보 신고인의 등록대행자와 기등록자의 등록대행자간의 업무 처리는 공문으로 진행함

□ 비활성화 모바일브랜드 현행화 방안

(※ 향후 시장의 상황에 따라 적용 예정)

○ 개요

-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비활성화 서버의 콘텐츠에 연결되는 모바일브랜드를 월단위로 현황 파악하여 삭제 조치함
- ※ 모바일주소(WINC)의 경우 비활성화 서버에 대한 이용자의 혼란 최소화를 위하여 시스템에 의한 활성화체크를 통해 활성화 되어 있는 콘텐츠에 대한 검색결과만을 나열하고 있음

○ 비활성화 모바일브랜드의 기준

- 전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상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콘텐츠에 연결되는 모바일브랜드
- 단, 파킹(Parking)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콘텐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건전 모바일브랜드 신고센터를 통해 이용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해당 등록자에게 통보하며, 통보일 기준 14일 이내 정상적인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

○ 조치방안

- 전 월의 비활성화 모바일브랜드 현황을 일정기간 동안 진흥원 웹과 등록자 이메일로 공지하고, 일정 유예기간(공지일 기준 14일)을 부여한 후 비활성화 유무 파악을 통해 삭제 조치함

□ 불건전 모바일브랜드 현행화 방안

(※ 향후 시장의 상황에 따라 적용 예정)

○ 범위

- 불법·청소년 유해 콘텐츠에 해당하는 모바일브랜드
- 사회질서 위반 정보(온라인상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,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 유포, 와레즈 사이트, 사행심 조장, 폭탄제조·자살 및 살인 등 콘텐츠)

- 음란·폭력·청소년 유해 관련 콘텐츠
- 인터넷상에서 정보통신서비스로서 영화·게임정보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불법·청소년 유해 콘텐츠
- 사이버 명예훼손·성폭력 콘텐츠에 해당하는 모바일브랜드
 -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, 모욕, 스토킹, 성폭력 등의 침해 행위
- 불량 콘텐츠에 해당하는 모바일브랜드

○ 처리개요

- 진흥원 웹을 통해 불건전 콘텐츠에 연결되는 모바일브랜드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
- 불법·청소년 유해 및 사이버 명예훼손·성폭력등에 해당하는 모바일브랜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심의
 - ※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별도 협의 필요

○ 조치방안

- 신고 접수된 모바일브랜드의 불법·유해성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불량 모바일브랜드등은 웹을 통해 공고 및 해당 등록자에게 공지
- 공지(또는 공고)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등록자의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해당 불건전 모바일브랜드는 삭제 조치함
- 삭제 조치한 모바일브랜드는 유보어(비속어)에 추가